#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501

발의연월일: 2025. 1. 14.

발 의 자: 김선교·김상훈·김성원

구자근・최보윤・김위상

서천호 • 박덕흠 • 최수진

이헌승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해수욕장에서 불꽃놀이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전면 금지되어 있으나, 해수욕장 이 용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음식 점 등 지역 상권의 상점에서 불만이 항상 존재하고 있음.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현수막, 방송 등을 통한 해수욕장 내 불꽃놀이 금지 안내에도 불구하고, 이용객들이 불법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단속을 피해 단발성으로 하는 경우가 다수이며, 현실적으로 단속이 불가능하여 해수욕장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이용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특히, 해수욕장 인근 상점 등에서 판매되는 폭죽 등 장난감용 꽃불류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

른 관할 시·도 경찰청장의 사전 판매 허가 사항에 해당하지 않고, 인
근 상점 등은 해수욕장법이 적용되는 구역이 아닌 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판매를 규제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따라 해수욕장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위해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할 필요성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기되었으며, 해수욕장 관리청인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에 따라해당 지역의 여건에 맞게 관리가 가능한 구역과 시간을 정하여 장난감용 불꽃놀이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실시 가능한 구역과 시간을 위반할 경우에는 집중 단속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안 제22조제1항).

법률 제 호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8호 본문 중 "백사장"을 "조례에 따라 정하는 구역과 시 간 외에 백사장"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해수욕장에서의 준수사항)	제22조(해수욕장에서의 준수사항)		
① 누구든지 해수욕장에서 다	①		
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u>백사장</u> 에서 「총포·도검·	8. 조례에 따라 정하는 구역과		
화약류 등 단속법」 제2조제3	<u>시간 외에 백사장</u>		
항제3호아목 장난감용 꽃불로			
놀이를 하는 행위. 다만, 관리			
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 13. (생 략)	9. ~ 13.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